

'22년 3/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서울
신용
보증
재단

안전관리 업무현황

업무현황 보고 및 안전이슈

- 3/4분기 점검 현황
- 보도자료(공공기관 사망사고 외)
- 산재 발생 시 대응 요령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2022. 09

1. 3/4분기 현장 점검현황(7~9월)

가. 7월 점검지점

○ 노원지점, 도봉지점, 성북지점

- 비상유도등 외부면이 열려 있어 먼지 등 유입 가능성, 고온경고표지 부착(노원지점)
- 고객응대 문구 미부착, 소화전 전면 공간 확보 필요 등(도봉지점)
- 비상유도등 적색램프 감지, 화재감지기 일부 이탈 등(성북지점)

나. 8월 점검지점

○ 금천지점, 마포지점, 양천지점

- 정수기 고온경고 안전표지 미부착, 분전반 전면공간 확보 필요 등(금천지점)

- 이동식 전선 가로질러 있어 보호관 조치 필요, 에탄올 MSDS 게시 필요, 소화기 내용 연수 기한 경과 등 (마포지점)

- 중량물 무게중심표지 부착 등 (양천지점)

다. 9월 점검지점

○ 영등포지점

- 분전반 표면 감전경고 안전표지 미부착, 손조심 경고표지 미부착 등(영등포지점)

총평

- 발굴된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조치 실시
- 지점별 개선된 사항을 단위사업장 책임자가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2-1. 보도자료 1 : 안전송

○ 안전보건공단 안전송 제작(22.07.11)

국민과 함께 만든 안전송, 국민가수가 부른다

안전보건공단, 내일은 국민가수 우승자 '박창근' 과 협업

가. 내용

- 노동자의 생명과 일터 안전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보다 쉽고 전달력 있게 알리기 위해 국민 참여 방식으로 제작(SNS 및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가사 공모 후, 반영)

나.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 일터 안전을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으자는 희망적 메시지를 담아 제작.

다. 제작 참여

- 범국민적 관심을 받는 가수와 협업하여 산업현장에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캠페인 추진



3-2. 보도자료 2 : 공공기관 사고사망 현황

가.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에서 집계한 자료(22.07.19)

- 공공기관의 직영 및 도급 사업장, 발주 현장에서 21년도에 발생한 사망사고 건으로 공표자료

(단위: 명)

공공기관명	2021년			
	계	직영	도급	발주
계	43	1	3	39
국가철도공단	3	-	-	3
국립공원공단	1	-	-	1
부산항만공사	1	-	-	1
한국공항공사	1	-	1	-
한국농어촌공사	4	-	1	3
한국도로공사	8	-	-	8
한국수력원자력(주)	1	-	-	1
한국수자원공사	1	-	-	1
한국어촌어항공단	1	-	-	1
한국전력공사	8	-	1	7
한국철도공사	2	1	-	1
한국토지주택공사	11	-	-	11
한국환경공단	1	-	-	1

* 직영: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 사고

* 도급: 공공기관이 도급인인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 사고

* 발주: 공공기관이 건설공사발주자인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3. 산재 발생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산업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제출

■ 과태료

미보고 시 1,500만원 미만 과태료

■ 판단기준

산업재해로 인해 결근 등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는 것이며, **의사의 진단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해 휴업을 판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제73조)

산업재해조사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답쪽)

I. 사업장 정보	① 산재신고번호 (사업장사번호)		사업장등록번호		
	② 사업장명		③ 근로자 수		
	④ 업종		⑤ 소재지 [-]		
	⑥ 재해자가 소속된 공구(간접) 제의		⑦ 원도급인사업장명	⑧ 재해자가 피근로자인 경우	⑨ 피근로사업장명
II. 재해 정보	⑩ 재해자가 소속인 사업장소재지역번호 (사업장사번호)		⑪ 사업장소재지역번호 (사업장사번호)		
	발주자		[기간 [] 국가-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⑫ 원수급 사업장명		공사업장명		
	⑬ 원수급 사업장 소재 연도번호(사업장사번호)		공사업장명		
⑭ 공사종류		공진률	%	공사금액	백만원

* 아래 항목은 재해자별로 각각 작성하되, 같은 재대로 재해자가 여러 명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 서식에 추가로 작성합니다.

III. 재해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국외인등록번호)		성별 [남] [여]		
	국적 [] 내국인 [] 외국인 [국적		영주권자: []		업종		
	입사일		년	월	일	종업종류 업무 연속기간	
	종근유형태 [] 상용 [] 임시 [] 일용 [] 부업(가계부수) [] 파견업자 [] 그 밖의 사항 []						
	종근유형태 [] 정장 [] 고교대 [] 고교대 [] 고교대 [] 사관대 [] 그 밖의 사항 []						
	종업종류 (일반명)		종업종류 (일반명)		종업종류상업수		유형 [] 일 시정 여부 [] 시정
IV. 재해 발생 경위 및 영향	발생일시		년	월	일	요일	
	발생장소						
	재해관련 직업유형						
재해발생 당시 상황							
재해예방 상황							

* 위 재해정보 기재사항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및 기술지도 등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나 즉시 기술지도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오른쪽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 요청 []

작성자 성명		작성일		년	월	일
작성자 전화번호		사업주		(서명 또는 인)		
		근로자대표(재해자)		(서명 또는 인)		
[] 지청고용노동청장(지청청) 귀하						
재해 분류자 기입란 (사업장에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발생형태		○○○	기타명	
		직업지역		○○○	작성내용	
				○○○	○○○	

210mm(297mm)×450mm(450mm) 또는 동등대형(A4)

*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에 시업준비, 재해종류별 등 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산업재해조사표 검색)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1-교육혁신실-104

고용노동부 인력보건공단

OPEN

4. 사내 안전보건관리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라,

- 휴게시설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제정할 필요 가 있음. (없는 경우 추가)

※ 내용이 있는 경우, 보완이 필요한 사항 추가

항목	세부내용	특이사항
크기	최소 바닥면적 6제곱미터 (공동휴게시설을 할 경우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 *사업장 수)	근로자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최소 바닥면적으로 함.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 2.1미터 이상	
위치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함. (이 경우, 공동 휴게시설은 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함.) 아래 3가지에 대한 사항과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함. 1)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2)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3)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생시키거나 소음에 노출되며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장소	
온도	적정한 온도(18℃ ~ 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을 갖춰야 함. (Ex 냉온풍기 등)	
습도	적정한 습도(50% ~ 55%)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함. (Ex 습도계, 냉온풍기 등)	
조명	적정한 밝기(100럭스~200럭스) 유지 (주기적으로 적정한 조도 측정)	
기타	창문 등을 통해, 환기 가능해야 함. (창문 열고 닫기 및 환풍기 설치)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 필요. (의자, 책상, 소파 등 비치)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가 갖춰져야 함. (정수기 등 비치)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휴게시설 외부에 부착해야 함. (휴게실 표시 부착)	
	청소·관리 등을 담당하는 담당자 지정 (정·부 담당자 표시)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 사용 금지 (휴게실 용도로만 사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참고